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학사지침

제정 2010.12.14. 지침 제15호
개정 2012.02.13. 지침 제21호
개정 2013.01.21. 지침 제40호
개정 2014.01.28. 지침 제50호
개정 2015.02.26. 지침 제70호
개정 2016.02.16. 지침 제87호
개정 2017.02.16. 지침 제90호
개정 2018.01.23. 지침 제101호
개정 2019.02.12. 지침 제147호
개정 2020.02.06. 지침 제179호
개정 2021.01.07. 지침 제192호
개정 2021.02.02. 지침 제193호
개정 2021.03.29. 지침 제21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1(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학금”이라 함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장학생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항공료, 최초소요경비, 한국어연수비, 보험료, 논문인쇄비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 ② “한국어연수기관(장)”이라 함은 재단이 지정한 장학생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장)을 말한다.
- ③ “수학대학(장)”이라 함은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을 말한다.<개정 2021.2.2.>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6개월 이하)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13., 2016.2.16., 2019.2.12.>

1. 한국어능력시험(이하 "TOPIK"이라 한다) 5급 이상인 자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가. TOPIK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 나.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다.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합격하여 입학예정인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면제 가능
- ②한국어연수과정을 수강하는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수료 후 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며, 동 시험에서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 한다. 단,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고 진학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1.21., 2018.1.23., 2019.2.12. 2021.2.2.>
- ③장학생 지원 당시 TOPIK 성적표를 미제출한 한국어연수 불참자도 TOPIK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입학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1.21. 2018.1.23. 2019.2.12. 2021.2.2.>

제2조의1(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①한국어연수과정의 장학생은 연수기간 중 학기별 출석률 85%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13. 2018.1.23. 2021.1.07.>

제2조의2(한국어연수과정의 연장) ①당해연도 선발된 한국어연수과정의 장학생이 9월학기 혹은 익년도 3월학기 대학진학 실패 시, 익년도 9월학기 진학 희망자에 한해 한국어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7. 2021.2.2.>

②제1항의 한국어연수기간 연장자는 익년도 3월부터 8월말까지 장학생 신분 유지되며 한국어연수 비용 및 생활비의 반액(5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2.16. 2018.1.23. 2021.1.07.>

③연장이 승인된 장학생은 TOPIK 성적 3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해야하며, 익년도 9월학기 대학 진학 실패 시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④한국어연수과정 연장자가 등록금면제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등록금면제자 선정심의 시 후순위로 고려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6.2.16.>

제3조(입학 지원) ①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장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개정 2018.1.23>
2.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 진학 시에는 재단 장학생으로서의 등록금 면제 혜택이 없으며, 공고문에 등록금 면제가 명시된 대학이라도 지방캠퍼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 의학, 치의학,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학교별 등록금 면제정원보다 합격인원이 많을 경우에도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면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2018.1.23>
3.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장학생 본인이 선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합격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2.2.13 2018.1.23>
4.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학생회비, 입학금 등)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②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13.1.21>

제4조(장학금 지급) ①생활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국어연수과정 불참자 및 한국어연수 중도포기자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13, 2015.2.26, 2016.2.16., 2018.1.23., 2019.2.12., 2021.1.07. 2021.2.2., 2021.3.29.>

1. 지급기간

- 가. 한국어연수과정 : 연수 시작 기간부터 지급(가을학기, 겨울학기)
- 나.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4년간
- 다. 석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2년간
- 라. 박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3년간
- 마.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대학별 수학연한 이내(단, 최대 4년간)
- 바. 조기졸업자 : 졸업학기까지

- 사. 한국어연수과정 연장자 : 연수 시작 기간부터 반액(50%) 지급(봄, 여름학기)
2. 지급시기 : 매월 5일
 3. 지급금액 : 월 95만원
 4.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 한국어연수기관에서 지급)
- ②최초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3.1.21, 2014.1.28>
- ③논문 인쇄비(석·박사, 석·박사 통합과정)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 및 학위 논문 제출자에 한해 1회 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5.2.26, 2016.2.16>
1. 논문 인쇄비 지급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논문 인쇄본 2부
- ④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개인별 서류 미제출 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2.16>
- ⑤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장학생 선발통보 이전학기(선발학기를 포함한다)의 생활비와 최초소요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2.16>

제5조(제출 서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13, 2013.1.21, 2016.2.16>

1. 입학 확정 시 : 입학이 확정된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개정 2012.2.13>
2. 매학기 종료 후
 - 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봄학기(3월) : 7월 20일까지 제출
 - 가을학기(9월) : 1월 20일까지 제출
 -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봄학기(3월) : 9월 10일까지 제출(선발년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8월31일까지 출입국내역)
 - 가을학기(9월) : 3월 10일까지 제출(선발년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출입국내역)
 - 일시출국자는 귀국 후 7일 이내 제출
3. 휴학 후 재등록 시 :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확인서 1부<개정 2019.2.12.>

4. 매월 15~20일까지 : 익월 생활비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신입생 준비서류) ①신입 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 15일전까지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3.1.21., 2019.2.12.>

1.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본인 명의 통장사본(장학금 수령계좌) 1부
3. 항공권 영수증(INVOICE) 및 항공권 각 1부

②외국국적 동포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다.<개정 2013.1.21>

③국내 연락처(핸드폰) 및 E-mail 정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단에서 안내하는 대부분의 공지사항이 E-mail을 통해 전달되므로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도메인(hotmail, gmail, naver, daum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2.16 2018.1.23>

제7조(보험 가입) ①초청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단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조치하며, 보험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과 동일하다.

②보험가입 내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공지된 보험사에 문의한다.<신설 2012.2.13>

제8조(숙소) 장학생은 수학 대학에서 지정하는 숙소 또는 개별 숙소를 이용하며, 숙소 사용에 따른 경비는 장학생 본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3>

제9조(항공료 지급) ①입국항공료는 최초 입국 시 1회 지급하고,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지급한다.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INVOICE(영수증) 원본의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1.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별표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국내이동 및 국내이동항공료는 비용절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 편도 항공료는 전액(100%)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 및 '재단에서 Stop Over라고 판단하는 일정의 항공료'는 반액(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6.>

③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21.>

④귀국항공료는 제20조에 의거하여 귀국 시 지급하며,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2016.2.16. 2021.1.07.>

1. 귀국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졸업증명서 1부
3. 논문(석·박사 해당자) pdf 1부 및 양장본 원본 2부
4. 귀국항공권 및 항공권 영수증 각 1부

⑤불합격자 및 중도탈락자도 다음 서류 제출시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단, 자격상실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며, 무단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3.1.21>

1. 귀국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장학생 자격포기 확인서 1부<개정 2018.1.23>
3. 귀국항공권과 항공권 영수증 각 1부

⑥졸업자의 귀국항공료는 졸업 당해연도 중에 일괄지급한다. 단, 귀국 전 장학금 계좌 해지 등으로 귀국항공료를 미리 받아야할 경우에는 출국 30일전까지 재단으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9.2.12.>

⑦세계적 규모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대규모 항공기 운항 취소 또는 축소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항공료 지급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1.1.07.>

제10조(등록) 장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수학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 장학생은 등록한 수학대학에서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제12조(성적 보고) 장학생은 매학기 종료 후 제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 1부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제13조(성적 관리) ① 각 학기별 학업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한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2.16., 2019.2.12., 2020.2.6.>

1. 경고 :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과정은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2. 주의 : 1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과정은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3. 계절학기 성적은 평가에 합산하지 않으나, 장학금 지급 제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합산하여 평가
- ②등록금 면제 대학 입학자는 대학의 장학금 면제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제14조(휴학 신청) ①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질병,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세계적 규모의 전염성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2개월 전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 2016.2.16., 2021.1.07.>

1. 휴학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3. 입영통지서 1부(입대휴학의 경우에 한함)
4. 지도교수의견서 1부(필요시)

②재단의 승인 후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휴학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3.1.21>

③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후 신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2.16>

④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15조<삭제 2013.1.21>

제16조(복학 및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은 제1항의 수학대학 복학 승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복학신청서와 복학관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재단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6>

③복학 후 장학금 지급 개시는 3월, 9월로 정한다.<개정 2012.2.13>

제17조(일시출국 신고) ① 학기 중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부모사망,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출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허락을 받아 출국한다. <개정 2012.2.13, 2013.1.21>

② 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시출국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부모사망, 급성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일시출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13, 2013.1.21, 2016.2.16>

제18조(일시출국기간) ① 일시출국기간은 1회 60일, 연간(3월~이듬해 2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재단 및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 2014.1.28., 2020.2.6., 2021.3.29.>

② 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3조에 의한다<개정 2012.2.13., 2013.1.21>

③ 한국어연수과정 기간 장학생은 일시출국을 불허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단,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및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제19조(재입국 신고) 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갖추어 재단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② 제1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미제출시에는 해당 월 생활비 지급을 유예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6.2.16>

제20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 귀국 또는 조기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전까지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2016.2.16., 2021.1.07.>

1. 귀국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장학기간 종료 해당자는 불필요)

②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학사는 6개월, 석사는 12개월, 박사는 18개월까지 귀국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장학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마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귀국연기신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2016.2.16>

③귀국신고자에게 이사장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가 지원되지 아니한다.<신설 2013.1.21, 개정 2016.2.16>

1. 취업, 결혼 등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2. 무단귀국, 취업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귀국연기신고서 미제출자
4. 장학기간(귀국연기기간을 포함한다)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귀국하는 자

제21조(연락처 변경 신고) 주소지 또는 연락처나 여권, 학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7일 이내 재단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2.2.13>

제22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한국어연수과정(입학전 6개월) 외에 학부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대학별 수학연한에 준하며 최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5.2.26., 2019.2.12.>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①일시출국일수가 학기당 3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출국기간을 계산(31,660원/일)하여 생활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3, 2013.1.21, 2014.1.28., 2016.2.16., 2021.1.7., 2021.3.29.>

②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제5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초과지급한 생활비는 장학생이 반납하거나 지급 재개시 차감한다.<신설 2013.1.21>

③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④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한국어연수기간(방학기간 포함) 중 일시출국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에 불참한 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

⑤일시출국일수가 제18조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일시출국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3.29.>

제24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2.2.13, 2013.1.21, 2014.1.28, 2014.2.12., 2016.2.16.>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표절이 확인되었을 때<개정 2021.1.07.>
2.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3.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학기 중 또는 한국어연수기관 재학 중 무단으로 일시출국한 때<개정 2021.1.07.>
6.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총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개정 2018.1.23>
7.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8.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
9.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포기자)
10. <삭제 2014.1.28>
11.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는 80%미만으로,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개정 2020.2.6.>
12.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13.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14. <삭제 2021.1.07.>
15. <삭제 2018.1.23>
16. 등록금면제 협조 대학의 등록금 면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17. 제25조에서 정하는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신설 2021.1.07.>
18.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중 익년도 3월학기, 한국어연수과정 연장 장학생 중 9월학기에 1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때<신설

2021.1.07.>

19. 재단의 승인 없이 2개 이상의 학교에 입학한 자<신설 2021.2.2.>

② 제1항의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은 제27조(중요 사항의 결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13, 2014.1.28>

③ 제1항 제16호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비면제자 또는 일부면제자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장학금(등록금으로 한정한다)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2.16., 개정 2018.1.23.>

제24조의1(장학생 자격포기 및 장학금 반환) ①장학생은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중단 및 장학생 자격 포기 희망 시, 2개월 전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신청한다.<신설 2015.2.26>

1. 장학생 자격포기 확인서 1부<개정 2018.1.23>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필요시)<개정 2020.2.6.>

3. 자격포기 사유 관련 증빙서류 1부(필요시)<개정 2020.2.6.>

②재단에 사전 미통보, 무단 학업 중단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생활비는 장학생이 즉시 반납하거나 귀국항공료 지급시 차감한다. <개정 2018.1.23>

제25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개정 2012.2.13., 2014.1.28.>

1. 한국어연수기간 중 학기별 출석률 85% 미만인 경우<개정 2021.1.07.>

2. 방학 중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출국 하거나,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3.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과정은 80%미만인 경우,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개정 2019.2.12.>

4.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재단 경고 1회로 간주하되 당해 학년에 성적과 관련하여 이중경고 처분은 하지 않음

제26조(주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주의 처분한다.<신설 2012.2.13>

1. 1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 시 학부 과정은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개정 2019.2.12.>

2. 제출서류(제5조)를 사전 연락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는 경우
4. 수업방해 등으로 해당 학교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에서 통보해 온 경우
<신설 2021.1.07.>

제27조(중요사항의 결정) ①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경고 및 주의 부여,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인턴, 휴학,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시간제 취업 등의 중요 사항은 내부결재를 통하여 정한다.<신설 2012.2.13, 개정 2014.1.28., 2015.2.26., 2021.1.07.>

②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4.1.28, 2016.2.16>

1. 교환학생(해외인턴) 허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3. 공공기관 해외인턴은 공공기관장의 추천서 및 해외인턴합격통지서

③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의 경우, 생활비를 지급치 아니한다.<신설 2014.1.28>

④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신청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2.26>

1.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1부
3. 석·박사 통합과정 변경 증빙서류 1부

⑤ 시간제 취업 신청의 경우 근무시작 1개월 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07.>

1.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시간제 취업 확인서(합격통지서 등) 1부
3.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1부

제28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생의 소속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29조(재단 행사참석 의무) ①장학생은 역사문화체험, 장학증서수여식 등 재단 공식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질병, 학사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

으로 불참시 불참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제1항의 역사문화체험의 경우, 1회 불참시 별점 1점, 재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불참시 별점 1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총 누적 별점이 4점 이상일 경우, 경고 처분한다.<개정 2016.12.16. 2018.1.23., 2019.2.12.>

③ 지역별 장학생 네트워크 활동, 연말 봉사활동, 청소년초청연수 자원봉사요원, OKFriends 자원봉사단 등 재단 사업 참여시에는 각 사업별 중요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신설 2014.1.28. 개정 2016.12.16., 2020.2.6.>

제29조의1(마일리지제도 운영) ①재단은 장학생의 재단사업 참여 활성화와 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며,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차기 학위과정 재지원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마일리지는 제29조 제3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2.6.>
<본조신설 2016.2.16>

제30조(소감문 작성 의무) 장학생은 귀국 전까지, 귀국신청서의 수학소감을 성실히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5.2.26, 개정 2016.2.16., 2019.2.12.>

제31조(학사관리시스템 활용 의무) 장학생은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기본정보(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성적 등) 등록, 각종 제출서류 등록(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학사관련 신청(휴·복학, 일시출국, 귀국연기 등), 졸업 후 근황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신설 2015.2.26>

제32조(시간제 취업) ①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을 우선한다. 다만, 내실있는 유학생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다.<신설 2021.1.07.>

1. 전공 및 진로와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시간제 취업은 방학 기간에만 허용한다.

②시간제 취업을 하는 장학생은 근무 1개월 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시간제 취업 확인서(합격통지서 등) 1부
3. 지도교수 및 소속대학장의 추천서 1부

부칙<제15호, 2010.12.14.>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호, 2012.2.13.>

1. 이 지침은 '12.2.13.부터 시행한다.
2. 다만, '09년도 이후 선발되어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은 이 지침의 제13조 성적 관리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제40호, 2013.1.21.>

1. 이 지침은 '13.1.21.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3.3.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0호, 2014.1.28.>

1. 이 지침은 2014.2.1.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3조 생활비 지급 규정은 2014.3.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0호, 2015.2.26.>

1. 이 지침은 2015.2.26.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호, 2016.2.16.>

1. 이 지침은 2016.2.16.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호, 2017.2.16.>

1. 이 지침은 2017.2.16.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호, 2018.1.23.>

1. 이 지침은 2018.1.23.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호, 2019.2.12.>

1. 이 지침은 2019.2.12.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13조·25조·26조 성적기준 관련 규정은 2018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79호, 2020.2.6.>

1. 이 지침은 2020.2.6.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호, 2021.1.7.>

1. 이 지침은 2021.1.7.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조의1·25조 한국어연수과정 출석 관련 규정은 2021.3.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93호, 2021.2.2.>

1. 이 지침은 2021.2.2.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4호, 2021.3.29.>

1. 이 지침은 2021.4.1.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23조 제5항 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관련 규정은 2021.9.1.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논문인쇄비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논문 제목(한글/영문명)			
2. 논문 요약(간략히 논문 설명)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익월 생활비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생활비 신청월	00월		
1. 수학현황(학적상태 이상여부 등 간략히 기술)			
예시) 현재 00학년 00학기 재학중에 있으며,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00월 생활비를 신청합니다.			
근래 일시출국 내역	2021.00.00~2021.00.00, 중국, 가족방문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신청서

※ 국내체류 졸업생의 경우 해당항목만 작성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귀국사유	☐ 학위 취득 ☐ 불합격 ☐ 중도포기			
수학과정	☐ 한국어연수 ☐ 학사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수학학교/ 전공				
졸업논문명 (졸업년도)				
귀국예정일		귀국경로	한국(인천) →	
귀국 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주 소			
1. 수학 소감				
2. 수학 중 활동사항(논문발표, 특이사항 등)				

3. 귀국 후 활동계획
4. 건의 사항 및 의견

신청자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국하고자 귀국항공료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 (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휴학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휴학사유(구체적으로 기술)			
2. 휴학기간(복학시점 반드시 명기)			
거주국 간접 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복학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복학사유			
2. 휴학기간(복학시점 반드시 명기)			
상기명 본인은 _____년도 ____학기 복학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거주국 긴급 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일시출국신고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일시출국 사유			
2. 출국기간, 여정			
출국기간 긴급연락처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시된 기간 동안 출국하고자 하며, 출국기간 동안 본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명합니다.

2021. . .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귀국연기신고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주소			
사유서			

신청자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귀국일을 6개월 연장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교환학생(해외인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1. 사유(구체적으로 기술)			
2. 기간(프로그램 기간, 복귀시점, 학점인정여부 등 반드시 명기)			
거주국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2021. . .

신청자 성명 (Name) : _____

신청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국수학 소감문

이름		생년월일	
국가명		선발년도(기수)	
소속(학교/학과)			
연락처(핸드폰)			
주소			
소감문(3페이지 내외)			

2021. . .

제출자 성명 (Name) : _____

제출자 서명(Signature) : _____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별 표)<개정 2021.1.07.>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

(2020. 1. 현재, 개인 / 인천(ICN))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일 본	도쿄	1,486,300	1,083,800	669,900
	오사카	1,233,400	899,400	554,300
	후쿠오카	975,700	711,400	436,500
	삿포로	1,699,800	1,239,400	767,500
	나고야	1,345,700	981,100	605,600
	니가타	1,444,700	1,053,400	650,900
	고베	1,275,200	929,900	573,400
	오이타	1,054,700	769,100	472,600
	오кина와	1,619,700	1,181,000	730,900
	가고시마	1,145,700	835,400	514,200
	아오모리	1,615,200	1,177,700	728,800
	오카야마	1,133,400	826,500	508,600
	센다이		1,157,000	715,400
	미야자키		869,000	535,800
중 국	북경	1,334,000	1,012,000	723,000
	상해	1,263,500	958,600	684,000
	심양	1,119,500	849,200	604,600
	청도	1,039,500	788,500	560,400
	청두 (성도)		1,414,000	1,118,200
	정저우	1,433,500	1,087,500	781,200
	창사	1,714,800	1,300,900	933,000
	대련	1,014,800	769,800	546,800
	광저우	1,911,300	1,449,800	1,041,400
	지난	1,239,500	940,300	670,800
	무단장	1,321,000	1,002,100	715,800
	심천	1,951,800	1,480,600	1,063,800
	통시 (황산)	1,390,000	1,054,500	752,400
	천진	1,242,500	942,500	672,4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위 해	1,013,300	768,700	546,000
	우 한	1,628,000	1,235,100	885,200
	하 문	1,714,800	1,300,900	933,000
	서 안	1,774,300	1,346,000	965,800
	연 길	1,201,800	911,700	650,000
	우 루 무 치	2,421,300	1,836,800	1,322,800
	쿤 밍	2,158,800	1,637,700	1,178,000
	허 폐 이	1,618,700	1,210,000	870,000
	선 전	1,951,800	1,480,600	1,063,800
	항 저 우		950,400	747,200
	난 징		948,000	745,400
	옌 청		1,132,600	884,900
	옌 타 이		698,800	546,000
	충 칭		1,378,400	1,089,600
	구 이 린		1,392,800	1,101,200
	장 춘		823,600	645,800
	하 열 빈		911,000	715,800
	하 이 커 우		1,501,600	1,188,200
몽 골	울 란 바 타 르	2,080,000	1,603,200	1,071,000
타 이 완	타 이 베 이	1,297,300	1,139,800	626,600
홍 콩	홍 콩	2,078,600	1,525,400	944,600
필 리 핀	마 닐 라	2,078,500	1,525,300	944,600
	세 부	2,320,300	1,738,000	1,092,000
	클 라 크 필 드	2,079,000	1,526,000	944,600
태 국	방 쿽	3,003,000	2,202,000	1,377,600
	푸 켓	3,160,300	2,760,600	1,451,400
	치 앙 마 이	3,160,300	2,681,800	1,451,400
베 트 남	다 낭	2,857,500	2,044,100	1,275,600
	나 트 랑	3,143,200	2,248,400	1,403,100
	호 치 민	2,857,600	2,044,200	1,275,600
	하 노 이	2,857,500	2,322,800	1,275,600
캄 보 디 아	프놈 펜	2,934,500	2,151,900	1,345,200
	씨 엡 립			1,320,000
미얀마	양곤	3,234,300	2,440,900	1,531,000
싱가폴	싱가포르	3,291,000	2,413,200	1,512,60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291,000	2,413,200	1,512,6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745,400	2,746,200	1,725,2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덴 파 샤 르	3,745,300	3,120,500	1,725,200
스 리 랑 카	콜 롬 보	4,780,400	3,414,500	2,050,000
몰 디 브	말 레	5,736,500	4,097,400	2,667,100
네 팔	카 트 만 두	4,149,000	2,931,500	2,236,000
인 도	뭄 바 이	4,269,000	3,414,500	2,293,000
	델 리	4,149,000	3,245,300	2,177,000
오스트레일리아	시 드 니 브 리 즈 번	6,961,700	4,405,500	3,472,500
	케 언 즈			1,900,000
팔 라 우	팔 라 우	2,735,800	2,007,500	1,243,400
피 지	난 디	4,620,800	3,624,400	2,484,200
뉴 질 랜 드	오 클 랜 드	7,218,400	5,145,000	3,569,600
미 국	호 놀 룰 루	8,661,700	5,792,800	3,066,200
	로 스 엔 젤 레 스 샌 프 란 시 스 코 시 애 틀	10,667,400	7,447,000	3,492,200
	라 스 베 거 스	11,033,900	7,755,700	3,656,100
	뉴 보 스 욱 워 싱 톤 아 틀 란 타	12,824,400	9,022,200	4,769,000
	시 카 고 달 라 스	12,591,900	8,729,400	4,605,700
	괌	1,695,000	1,237,300	837,800
	사이판		1,300,000	880,000
캐 나 다	토 론 토	12,428,400	9,207,900	4,749,700
	벤 쿠 버	10,667,400	7,447,000	3,492,200
아랍에미리트	두 바 이	5,149,100	3,767,000	2,440,700
이 스 라 엘	텔 아 비 브	8,446,900	5,344,800	3,008,900
프 랑 스	파 리	11,660,300	7,438,200	3,488,500
영 국	런 던	11,660,300	7,438,200	3,488,500
네 델 랜 드	암 스 테 르 담	10,095,300	6,180,100	3,020,200
독 일	프 랑 크 푸 르 트	11,660,300	7,438,200	3,488,500
이 탈 리 아	로 마 밀 라 노	10,095,300	7,022,800	3,020,200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베 네 치 아	10,095,000	7,323,000	3,020,000
오 스 트 리 아	비 엔 나	10,095,300	6,180,100	3,020,200
스 페 인	마 드 리 드 바 르 셀 로 나	12,243,400	8,517,200	3,488,500
체 코	프 라 하	10,095,300	6,180,100	3,020,200
터 키	이 스 탄 불	12,756,500	7,702,100	3,764,700
스 위 스	취 리 히	12,243,400	7,495,100	3,488,500
러 시 아	모 스 크 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318,500	6,468,900	3,158,600
	블 라 디 보 스 톱	2,075,000	1,737,800	962,000
	이 르 크 츠 크	2,946,000	2,168,800	1,150,000
	하 바 로 프 스 크		1,471,800	1,127,400
우즈베키스탄	타 쉬 켄 트	4,462,300	3,715,800	2,061,200
카 자 흐 스 탄	알 마 티		2,693,800	1,864,800
크 로 아 티 아	자 그 레 브	11,660,300	7,138,200	3,488,500

※ 상기 국외 항공요금은 노선별로 상한 금액에 해당